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4.

특 허 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법제처 심사 前

1. 개정이유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허고객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특허료(설정+연차등록료)를 인하하고,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매년 788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특허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상향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창출을 유도하고자, 분할출원제도에 누진적 가산제를 적용하고, 면제권자의 무분별한 출원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제건수를 하향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품의 지정방지를 위해 상표 출원시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일부축소하며, 마지막으로 현행 수수료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권리별(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상표권) 이전료가 상이한 것에 대해 권리이전료를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정기간연장 신청시 심사관·심판관이 불승인한 경우 신청료 반환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법령(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반영하여 특허고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특허 등록료(설정+연차) 인하

특허 등록료(설정+연차등록료) 전 구간(1년~존속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인하하여 우리 국민·기업의 권리유지부담 완화(안 §[별

표1]의 특허료(제2조제2항제1호관련))

나. 특허 심사청구료 일정부분 현실화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 연간 788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심사청구료 중 특허 심사청구료의 일정부분 인상(안 §2①7)

다. 상표 수수료 및 지정상품 개수 조정

- 1) (지정상품 개수 조정) 지정상품의 개수를 현행 20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10개를 초과할 경우 가산금 부과(개당 2천원)
- 2) (상표 수수료 조정) 상표출원 및 상표등록단계에서의 현행 상표수수료에서 일률적으로 1만원 인하하여 지정상품 축소와의 형평성 유지(안§5①1가·나·다·라, 5①6가1)·2, 5①6나1)·2), 5①7의2가1)·2), 5①7의2나1)·2), 5②1·2, 5②3가·나, 5③1가1), 5③1가1), 5③1나1)·2))

라. 분할출원에 대한 가산료 도입

분할출원이 출원유지 수단 또는 절차상의 심사기간 연장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현행 분할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에 일정횟수(2회~5회)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안 §2①3)

마. 면제자의 면제건수 제한

출원료 면제로 인해 무분별한 출원이 지속적으로 남발되어, 현행 면제자의 면제건수를 현행 연간 권리별(특허·실용신안·디자인) 10건에서 연

간 5건으로 조정(안 §[별표 4]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제7조제 1항제1호관련))

바. 권리별 이전등록료 조정

권리별 상이한 이전 등록료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수료 체계의 통일성 유지(안§2②2 라·§5②4라)

사. 지정기간연장 불승인시 신청료 반환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지정기간 연장신청시 심사관·심판관이 연장신청을 거절한 경우 해당 신청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부령(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규정(안§2 ①13의2·§2③11의2, §3①11의2·§3③11의2, §4①11의2·§4③10의2, §5①10 의2·§5③10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OOOO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OOOO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출원료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1회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 나. 2회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
- 다. 3회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
- 라. 4회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4배
- 마. 5회 이상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5배

제2조제1항제7호 중 “14만3천원”을 “16만6천원”으로, “4만4천원”을 “5만1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제2조제2항제2호라목 중 “5만3천원”을 “4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제3조제1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제3조제3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제4조제3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6만2천원”을 “5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7만2천원”을 “6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5만6천원”을 “4만6천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6만6천원”을 “5만6천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1) 중 “6만2천원”을 “5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7만2천원”을 “6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가목1) 중 “6만2

천원”을 “5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7만2천원”을 “6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21만1천원”을 “20만1천원”으로, “20개”를 “10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3만2천원”을 “12만2천원”으로,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1만1천원”을 “20만1천원”으로, “20개”를 “10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본문 중 “31만원”을 “30만원”으로,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19만4천원”을 “18만4천원”으로, “20개”를 “10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34만원”을 “33만원”으로, “20개”를 “10개”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21만3천원”을 “20만3천원”으로, “20개”를 “10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11만3천원”을 “4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가목1) 단서 및 같은 호 나목1) 단서 중 “20개”를 각각 “10개”로 하고, 같은 목 2) 중 “27만원”을 “26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별표 1]의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금액란 중 “1만5천원”을 “1만3천원”으로, 같은 란 중 “1만3천원”을 “1만2천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4년부터 제6년까지의 금액란 중 “4만원”을 “3만6천원”으로, 같은 란 중 “2만2천원”을 “2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7년부터 제9년까지의 금액란 중 “10만원”을 “9만원”으로, 같은 란 중 “3만8천원”을 “3만4천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의 금액란 중 “24만원”을 “21만6천원”으로, 같은 란 중 “5만5천원”을 “4만9천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의 금액란 중 “36만원”을 “32만4천원”으로, 같은 란 중 “5만5천원”을 “4만9천원”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면제대상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란 중 “10건)”을 “5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 등록료 인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특허료(제2조제2항 제1호 관련) 인하는 개정안 시행 후 특허 설정등록 또는 특허 연차등록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 심사청구료 인상에 관한 적용례) 특허 심사청구료(제2조제1항제7호)는 개정안 시행 후 특허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표 수수료 및 지정상품 가산금 조정에 관한 적용례) 상표출원시

지정상품 축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조정과 상표 수수료 조정안은 상표출원신청·상표재심사청구·상표심판청구·상표등록신청·상표지정상품추가신청·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출원 가산료 적용례) 분할출원에 대한 가산료 부과는 개정안 시행 후 특허분할출원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면제자의 면제건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면제자의 면제건수 제한은 개정안 적용 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심사청구·설정등록부터 적용한다.

제7조(권리 이전등록료 인하에 관한 적용례) 권리 이전등록료 인하는 개정안 시행 후 특허권·상표권 이전등록 신청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u><신 설></u>	3. ----- -- <u>분할출원료는 다음과 같다.</u> <u>가. 1회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u> <u>나. 2회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u> <u>다. 3회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u> <u>라. 4회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4배</u> <u>마. 5회 이상 :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5배</u>
3의2. ~ 6의2. (생 략)	3의2. ~ 6의2. (현행과 같음)
7. 특허심사청구료: 매건 <u>14만3천원</u> 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u>4만4천원</u> 을 가산한 금액	7. ----- <u>16만6천원</u> ----- <u>5만1천원</u> -----
7의2. ~ 13. (생 략)	7의2. ~ 13. (현행과 같음)
13의2. <u>지정기간 연장신청료</u>	13의2. <u>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u>

가. ~ 마. (생략) 14. (생략) ② 「특허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가. ~ 다. (생략)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u>5만3천원</u> 3. ~ 10. (생략) ③ 「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11의2. <u>지정기간 연장신청료</u> 가. ~ 마. (생략) 12. (생략)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실용신안	<u>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u> 가. ~ 마.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u>4만원</u> 3. ~ 10. (현행과 같음) ③----- -----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u>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u> 가. ~ 마.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11. (생 략)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 마. (생 략)

12. (생 략)

② (생 략)

③ 「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
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 마. (생 략)

12. (생 략)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
련 수수료) ① 「디자인보호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
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
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
련 수수료) ①-----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
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가. ~ 마. (생 략) 12. · 13. (생 략) ② (생 략) ③ 「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0의2. <u>지정기간 연장신청료</u>	<u>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u> 가. ~ 마. (현행과 같음) 12.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u>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u>
가. ~ 마. (생 략) 11. (생 략)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 「상표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 · 업무표장등록출원료 · 증명표장출원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상품(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가. ~ 마.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 ----- -----. 1. ----- ----- ----- ----- ----- ----- ----- ----- -----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7만2천원. 다만,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5만6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 -----

--- 5만2천원. -----
----- 10
개-----

나. -----

- 6만2천원. -----
----- 10개

다. -----

----- 4만6천원. -----

10개-----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고, 그 지정상품을 「상
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
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6만6천원.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
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
다.

2. 삭 제

3. ~ 5의2. (생 략)

6.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
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
하는 경우의 보정료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
출하는 경우: 매건 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

-----.

라. -----

5만6천원. -----
----- 10개-----

-----.

3. ~ 5의2. (현행과 같음)

6. -----

가. -----
-----.

로 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
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을 가
산한 금액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
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
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
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
로 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구분이

-----.

1) -----

----- 5만2천원 -----

2) -----
----- 10개 -----

-----.

나. -----
-----.

-----.

1) -----

보정 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
품류구분마다 7만2천원
을 가산한 금액

2) 보정 후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생략)

7의2.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청구료

가.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
재한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 6만2천 원 -----

[illegible]

7. (현행과 같음)

7의2. -----

가. _____

(「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구분마다 2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1)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6만2천원

2)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된 상품마다 2천원

나. 재심사청구의 취지를 기재한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의

-----.

-----.

1) -----

5만2천원

2) -----
----- 10개 -----

-----.

나. -----

청구 대상이 되는 1상품류
구분마다 3만원. 다만, 다
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
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다.

1) 보정 후의 상품류 구분
이 보정 전의 상품류 구
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
과하는 상품류 구분마다
7만2천원

2) 보정 후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
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
정상품마다 2천원. 다만,
지정상품의 가산금 부과
대상인 출원에 대한 보정
인 경우에는 보정 후 지
정상품 가산금 부과대상
상품이 보정 전보다 증가
된 상품마다 2천원

8. ~ 10. (생략)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가. ~ 마. (생략)

11. ~ 13. (생략)

-----.

-.

1) -----

6만2천원

2) -----
----- 10개 -----

-----.

8.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
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권(단체표장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증명표장권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등록료: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3만2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
 류구분마다 21만1천원에 1상
 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② —————
—————
—————

1. 20만1천 원 10개 12
만2천 원 10개

2. -----
----- 20만1천 원 -----
----- 10개 -----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가. 「상표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31만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9만4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상표법」 제8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

3. -----

--

가. -----

- 30만원-----

----- 10개-----

-----.

----- 18만4

천원-----

----- 10개-----

-----.

나. -----

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34만원에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21만3천원에 1상품류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상표권의 이전등록료

가. ~ 다. (생략)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11만3천원

5. ~ 13. (생략)

③ 「상표법」 제78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상품류

----- 33만원-----
----- 10개-----

----- 20만3천원-----
----- 10개-----

-----.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4만원

5. ~ 13. (현행과 같음)

③-----

-----.

1. -----
-----.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다.

2) (생략)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5만원. 다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다.

-----.

가. -----

1) -----

-----.

----- 10개 -----

-----.

2) (현행과 같음)

나. -----

1) -----

-----.

----- 10개 -----

-----.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 판의 경우: 매건 <u>27만원</u> 2. ~ 10. (생략) 10의2. <u>지정기간 연장신청료</u> 가. ~ 마. (생략) 11. (생략)	2) ----- ----- ----- <u>26만원</u> 2. ~ 10. (현행과 같음) 10의2. <u>지정기간 연장신청료(다 만, 지정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경우 신청료를 반환한다.)</u> 가. ~ 마.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	---

특 허 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특허권설정등 록일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u>1만3천원</u> 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u>1만2천원</u> 을 가산 한 금액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u>3만6천원</u> 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u>2만원</u> 을 가산한 금액
제7년부터 제9년까지	매년 <u>9만원</u> 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u>3만4천원</u> 을 가산한 금액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매년 <u>21만6천원</u> 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u>4만9천원</u> 을 가산 한 금액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u>32만4천원</u> 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u>4만9천원</u> 을 가산 한 금액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4] <신설 2022. 2. 18.>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면제대상	면제대상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등록료 (권리유형별·절차별 각각 연간 5건)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9.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10.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1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등록료, 출원인변경신고료
--	----------------------------